

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임희도 의원

제출일 : 2025. 8.

1. 제안이유

하남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,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장애인체육회 인건비 관련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준용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한종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·군 중 다수가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 산정 시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함에 따라 하남시 장애인체육회 직원의 처우를 공무원 보수체계에 맞추어 합리적·체계적 인건비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